

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20. 7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(이하 “센터”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지역사회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의·융합형 미래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설치) 본 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내에 둔다.

제4조(업무) 본 센터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의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
2.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에 관한 업무
3.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
4. 지역사회의 주민과 재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업무
5.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
6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5조(조직) ① 본 센터는 본교 4차산업기술교육원 내에 둔다.

② 본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두며,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, 연구교수 및 전문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③ 본 센터에는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④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⑤ 본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본교의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.

제6조(센터장) ① 센터장(및 부센터장)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③ 센터장(및 부센터장)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재 정

제8조(재정) 센터의 재원은 교비·산단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9조(예산 및 결산)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4 장 기 타

제10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세칙) 본 규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및 업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